



의안번호	제75호
-------------	-------------

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0. 6. 15.

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75호
----------	------

제출연월일 : 2020. 6. 15.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정이유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3조)
- 나. 시설 사용 및 사용료(안 제4조~제11조)
- 다. 창작공간 운영(안 제12조)
- 라.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13조)
- 마. 시설 사용·수익허가(안 제14조)
- 바. 시설물 사용권 양도금지 및 손해배상(안 제15조~제16조)
- 사. 보험가입(안 제17조)
- 아. 별칭사용(안 제18조)
- 자. 기타 관련규정 및 시행규칙(안 제19조~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6조, 139호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0. 5. 7.)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0. 5. 11.)
 - 3) 규제심사 : 대상 아님(2020. 5. 11.)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5. 6. ~ 2020. 5. 26.(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관광진흥과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 함은 강경의 근대역사를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강경근대건축물, 강경구락부, 김대건신부 기념관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강경근대건축물”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의 내외부를 정비 및 복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강경구락부”라 함은 옛 강경포구의 번성했던 생활상을 재현할 목적으로 조성된 숙박시설, 식음료판매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김대건신부 기념관”이라 함은 김대건신부의 첫 사목지가 강경임을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기념관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이하 “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 한다)은 논산시 강경읍 중앙리·서창리·홍교리 등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각각 설치할 수 있다.

1. 강경근대건축물
 - 가. 도서관, 전시관, 미술관, 기록관, 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
 - 나.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예술창작공간(이하 “창작공간”이라 한다)
 - 다. 판매시설

-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2. 강경구락부
 - 가.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시설
 -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3. 김대건신부 기념관
 - 가. 전시관
 -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숙박시설을 제외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이용시간은 매일 10: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날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
- ②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
- ③ 논산시(이하 “시” 라 한다)는 사정에 따라 개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등) ①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관람료) ① 강경구락부 내 숙박시설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③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환급) ①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창작공간 운영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창작 공간에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활성화 및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를 위해 입주작가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입주작가의 활동기간은 연중 수시로 한다.

③ 입주작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와 계약을 맺고 사용한다.

1.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의무 사항

2. 입주 기간

3.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입주계약에 필요하여 상호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시의 필요에 따라 입주한 작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창작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창작공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산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한다.

제15조(양도금지)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손해배상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 및 보관물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화재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별칭사용)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관련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관광시설”이라 함은 선사인랜드, 강경 젓갈전시관 및 그 밖의 시설

을 말한다.

별표 관광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중 “강경근대건축물, 객주촌, 강경포구 안내센터, 김대건 신부 기념관” 부분을 삭제한다.

②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관광체육과 위탁사무란 중 “논산 밀리터리파크”를 “논산 선샤인랜드”로, “강경 근대건축물·객주촌·김대건신부기념관”을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강경근대건축물·강경구락부·김대건신부 기념관)”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관 광 체 육 과 장	임 재 용
	관 광 개 발 팀 장	유 현 숙
	담 당 자	김 난 이 (7 4 6 - 5 7 4 4)

[별표 1]

숙박시설 사용료 (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수용인원	주 중	주 말	비고
양식형	숙소 1	4~5인	100,000	120,000	전체 사용 시 180,000원(주중) 220,000원(주말)
	숙소 2	4~5인	100,000	120,000	
온돌형	숙소 1	3~4인	60,000	80,000	전체 사용 시 250,000원(주중) 300,000원(주말)
	숙소 2	5~6인	110,000	130,000	
	숙소 3	5~6인	110,000	130,000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이라 함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 퇴실시간을 초과하여 퇴실할 경우 1시간마다 10,000원의 추가요금을 납부하고, 14:00 이후 퇴실 시에는 1박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2]

숙박시설 외 시설 사용료 (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개인·단체 등	방송국	영화, 광고 등	비고
양식당	200,000	500,000	500,000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일식당	200,000	500,000	500,000	
카페테리아	200,000	500,000	500,000	
통합사용	500,000	1,000,000	1,000,000	

* 사용료는 1일 기준이며, 1일은 00:00~24:00로 한다.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감면률
1.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0퍼센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0퍼센트
4. 「주민등록법」에 따라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50퍼센트
5. 논산 명예시민 및 사이버시민인 경우	30퍼센트
6. 자매결연도시·우호교류도시 주민인 경우	30퍼센트
7. 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수련활동인 경우	50퍼센트

※ 사용료 감면 금액 천원미만은 절삭.

[별표 4]

사용료 환급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p>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배상
<p>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 전액 환급
<p>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 환급 금액 천원미만은 절삭.

[별지 제2호서식]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근대건축물, 구락부, 김대건신부기념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사용자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사용내역	행사명			
	사용시설명			
	사용 목적			
	대 관 일 자			
	준비사용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행사사용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철수사용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참여예상인원			
	관람료			
	사용료	사용요금		
사용료 내역				
허 가 조 건				
1. 「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 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6. 행사 중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사용자가 수거·처리하여야 합니다. 7.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				
「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 </div>				

[별지 제3호서식]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사용료 면제신청서			
신청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단체명		
사용구분			
사용목적			
사용면제서류			
면제의 종류			
사용기간			
기 타			
첨 부	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공연)계획서 1부.		
<p>「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논산시장 귀하</p>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세입
 - 제7조(사용료 및 관람료) : 시설 사용료
- 세출
 - 제14조(사용·수익허가) :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등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세입 :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사용료를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징수 기준에 의거 산출/년간
- 세출 :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및 인건비 산출/년간
- 논산 강경구락부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보고서 산출기초에 따름

나. 추계결과

구분	시설물	직영시	위탁시	임대시
세입	숙박시설	147,424,734	147,424,734	22,703,111
	식당	277,444,150	277,444,150	20,807,845
	카페테리아	148,899,674	148,899,674	11,605,438
	소계	573,768,559	573,768,559	55,116,393
세출		849,382,928	838,173,361	84,452,406
영업이익		△275,614,370	△264,404,803	△29,336,013

3. 작성자

관광체육과장 임재용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849,383	899,666	951,249	1,009,885	1,074,898	4,785,081	
국 비						0	
기 금						0	
도 비						0	
시 비	849,383	899,666	951,249	1,009,885	1,074,898	4,785,081	
세 출	849,383	899,666	951,249	1,009,885	1,074,898	4,785,081	
인건비 등	849,383	899,666	951,249	1,009,885	1,074,898	4,785,081	
재원 조달	849,383	899,666	951,249	1,009,885	1,074,898	4,785,081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49,383	899,666	951,249	1,009,885	1,074,898	4,785,081
	지방세	275,614	234,073	184,713	130,138	67,988	892,526
	세외수입	573,769	665,593	766,536	879,747	1,006,910	3,892,555
	공모사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논산 강경구락부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보고서 산출기초에 따른 “직영” 시로 작성함.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